

광주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3나752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3나7528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소1436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10. 20.

판결선고 2023. 12. 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소1436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외 C은 2005. 7. 무렵 원고가 C에게 광주 서구 D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다음부터 ‘E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6. 5. 무렵 원고가 C에게 전남 함평군 F 외 2필지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맺었고(다음부터 위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합해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C은 위 각 신축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에게 2005. 12. 23.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다음부터 ‘2005. 12. 23. 자 대여금’라고 한다).

다. 한편, 2005. 12. 23. 원고 명의의 소외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소외 H의 이름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이어 2,000만 원(다음부터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출금되었다.

라. 원고, C은 2007. 7. 무렵 2005. 12. 23. 자 대여금 전부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마. 원고는 2010. 3. 4. C을 상대로 2005. 12. 23. 자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광주지방법원 2010가단12673), 위 법원은 위 가., 나., 라.항의 사실을 인정한 뒤 위 청구를 기각했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2012. 9. 22. 확정되었다(다음부터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5, 6, 8, 9, 11, 12, 33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를 통해 원고의 사촌오빠이자 원고로부터 E 빌라 I호를 분양받은 H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명목으로 소외 G조합로부터 위 I호를 담보로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뒤, 그 대출금의 수취계좌는 공란으로 둔 채 H의 이름과 그 명의 인장만 날인한 전표를 작성해 C에게 교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C은 2005. 12. 23. H의 동의 없이 G조합에게 위 H 명의의 전표를 제출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했다. C은 같은 날 G조합에게 원고로부터 미리 받아둔 전표(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한다는 내용으로, 수취계좌는 공란으로 둔 채 원고의 이름과 그 명의 인장만 날인한 것)를 제시해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대출변제용 계좌로 입금시켰다.

따라서 피고, C, G조합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C이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대출변제용 계좌로 입금시킨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거나, 또는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2. 판단

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좌에서 2005. 12. 23. 이 사건 금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과 그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앞서 인정한 원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금원 및 2005. 12. 23. 자 대여금의 대여일과 금액이 동일한 점,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을 받은 후 C의 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위 등을 종합해서 보면, 이 사건 금원은 2005. 12. 23. 자 대여금과 같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C, G조합가 공모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한상원, 판사 차유나

1)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가 청구원인을 분명히 하지 않았으나 이를 선행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선행한다.